

이익의 배당과 손실의 분담에서 나타난 분배규범의 선호양상¹⁾

고 재 홍

경남대 사회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얻은 이익이나 분담해야 할 손실을 분배자가 어떤 규범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분배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분배자가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추구하려는 동기를 지닌 경우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동기를 지닌 경우의 분배규범 선호차이를 살펴보았다. 실험 1에서는 대체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투입이 작을 때는 평등규범을 선호하고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는 형평규범을 선호하여 자신의 이득을 충족시키는 선택적 선호를 보여주었다. 반면, 체면을 앞 세워야 할 상황에서는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투입크기가 동등한 경우는 분배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등한 분배를 하고 있었다. 부담의 분배를 다룬 실험 2에서는 전반적으로 분배자들이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크고 체면동기가 강한 조건에서는 평등규범의 선호가 우세했으며, 자신의 책임이 작으며 체면동기가 큰 조건과 책임은 크지만 이익동기가 강한 조건에서는 어느 한 규범으로 분담크기를 결정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실험 1과 2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득과 손실의 분담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용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상적인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그 관계가 공정한(fair) 관계인지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각은 그들의 감정이나 후속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공정함을 느끼며, 또한 어떤 경우에 불공정을 느끼는가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여러 학자들은 사람들이 일상적 생활에서 느끼는 공정-불공정의 원천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예: Mikula, Petri, & Tanzer, 1990). 첫째는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이다. 둘째는 절차의 공정성이다. 이는 주로 집단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관련된 공정성 지각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즉 교류)에서의 공정성이다. 즉 상대방의 행동방식이나 자신을 취급하는 방식(매너)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관련된 지각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주제이며 경험적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분야는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 혹은 분배의 정의(justice)와 관련된 분야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이론적 측면에서도 보상이나 손실의 분배에서 당사자들에게 “공정함”을 느끼게 하는 기준에 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Deutsch, 1985).

1) 초고를 읽고 많은 비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주요 지적 사항은 전채논의에서 언급하였다.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는 kopsy@kyungnam.ac.kr이다.

모든 사회집단은 자기 집단이 생산한 성과와 이 과정에 필요한 투입이나 비용을 구성원들에게 할당한다. 그들은 이러한 성과나 부담(혹은 비용)의 할당을 위해 집단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규범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의 연구들은 손실의 분배에 대한 규범보다는 보상의 분배에 관한 연구들이고, 손실의 분배는 보상의 분배와 같은 기제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사회심리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여러 보상분배 규범들 중 형평규범(norm of equity)과 평등규범(norm of equality)을 중시하고 있다(예: 장성수, 1987; Leventhal & Michaels, 1969;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보상분배 상황에서 형평규범에 근거하여 보상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분배자가 각자의 투입크기를 알아내야 하고 보상을 투입크기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는 정보처리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보다는 인지적 부담이 적은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Messick & Schell, 1992). Messick 등(Messick, 1993; Messick & Schell, 1992; Messick & Sentis, 1983)은 일반적으로 평등규범이 선호되는 이유는 첫째, 이 규범이 이해가 쉽고, 둘째, 어떤 구성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규범이 아니고, 셋째, 실천하기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경제적 투입의 크기(예: 투자액)보다는 심리적 투입의 크기(예: 노력)는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어도 각 개인은 자신의 보상 몫을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투입크기를 과장하여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실의 몫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투입크기를 과소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분배규범은 평등규범이다.

그러나 모든 분배상황에서 평등규범이 형평규범보다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장성수, 1987; Ohtsubo & Kameda, 1998 참조). 지금까지의 보상분배에서 어떤 규범이 선호되는지에 관한 실험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제 3자인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보상을 형평에 맞게 혹은 어긋나게 집단성원들에게 분배한 다음 보상 수혜자(피

험자)의 반응(예: 만족도)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주로 형평이론(예: Adams, 1963, 1965; Walster et al., 1978)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절차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예: 장성수, 1987; Lerner, 1975)은 보상의 분배에서 어떤 규범이 더 공정하게 지각되는지는 여러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Sampson(1975)은 서구 사회의 보편적 분배 규범인 형평규범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문화에서, 그리고 이 익추구가 강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용되는 것인 반면,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한 방향은 실험자가 공동작업을 지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피험자 개인의 투입크기를 조작하여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직접 분배하도록 하여, 분배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피험자도 공동작업자 중 한 사람이고 실험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 몫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배형태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주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작업자의 투입크기를 다르게 조작하여 알려 준 다음, 그들의 보상분배 형태를 살펴 본 연구들의 대부분(예: Leventhal & Anderson, 1970; Leventhal & Michaels, 1969)은 피험자들이 자신의 투입과 공동작업자인 상대방의 투입을 비교하여 투입크기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평등규범보다는 형평규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들(예: Mogan & Sawyer, 1967; Wiggins, 1966)에서는 투입크기와 관계없이 대체로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규범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상의 분배규범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상충된 결과는 분배규범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먼저 분배상황에 따라 분배규범의 선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Shapiro(1975)는 형평규범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은 주로 공동작업자인 피

협자들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면, 평등규범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은 피험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거나 추후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추후에도 상대방과의 또 다른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들이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투입이 큰 피험자들은 평등규범을, 투입이 적은 피험자들은 형평규범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성원간의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상황과 협동이 요구되는 조건에서는 구성원들은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반면, 개인의 성과가 중시되는 상황과 경쟁이 요구되는 조건에서는 형평규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Leventhal, 1976).

Giuliano와 Wegner(1981)의 연구에서는 한 조건에서는 공동작업자인 피험자들의 작업장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서로 볼 수 있게 한 반면, 다른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 앞에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공동작업자들이 하나의 단위로 지각되는 전자의 조건에서는 보상분배에서 평등규범의 선호가 우세한 반면, 개별 단위로 지각되는 후자의 조건에서는 형평규범의 선호가 우세하였다. Mogan과 Sawyer(1967)의 연구에서도 공동작업자를 같은 반 학생들인 동질적 집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상분배에서도 평등규범이 선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성수(1987)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작업집단의 응집성을 조작하여 작업성과로 주어진 보상을 피험자들이 어떤 형태로 분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실험지시를 통해 집단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함으로써 응집성이 큰 조건을 만들었고, 개별 생산성을 강조함으로써 응집성이 작은 조건을 만든 다음, 그들에게 지급된 보수를 분배하도록 하였다(실험 1). 그 결과 응집성이 큰 조건에서는 평등규범에 근거한 분배형태(61%)가 형평규범에 근거한 분배형태(39%)보다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응집성이 작은 조건에서는 평등규범에 근거한 분배형태(11%)보다는 형평규범에 근거한 분배형태(89%)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상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의 분배규

범을 선택하는데 관여하는 상황적 요인은 많다. 특히 그 집단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자원의 분배에 관한 규칙(Deutsch, 1975), 분배자와 공동작업자간의 관계(Austin, 1980; Shapiro, 1975), 그리고 보상분배를 작업자 자신이 하느냐 혹은 제 3자가 분배하느냐의 여부(Bazerman, 1985)도 분배규범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룬 두 가지 보상분배 규범(형평규범과 평등규범)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분배자와 공동작업자간의 인간관계의 질로 보인다. 즉 그들의 관계가 공동운명체 관계이거나 결속이 강한 관계에서는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반면, 개별적이거나 결속이 약한 관계에서는 형평규범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배규범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분배자의 개인적 특징과 관련된 것들이다. Deutsch(1983)는 분배정의에 관련된 주요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분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험자의 성, 나이, 국적, 및 성격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효과가 간과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Fenigstein, Sheire, 및 Buss(1975)의 자의식 척도를 이용한 최광선(1987)의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awareness)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인상관리에 도움이 되는 분배규범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규석(1987)은 분배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그것과 상황에 대한 지각이 결합되어 분배규범을 채택하는데 작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권력성 자원의 분배 상황에서 분배자의 집단내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는 안정적인 경우보다 평등분배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분배자의 개인적 특징(예: 권력)과 상황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배규범이 선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ampson(1975)도 어떤 사회-역사적 시기에 지배적인 정의의 개념은 그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 특징이 분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Schwinger(Mikula, 1980에서 재인용)는 개인이 지닌 '공손 예의(politeness ritual)'가 자원의 분배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개인차 변인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개인차 변인의 중개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자신에게 더 자원을 더 적게 분배하는 경향성이 있다면(예: Kahn, O'Leary, Krulowitz, & Lamm, 1980), 그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인관계의 조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공손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자들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어릴 때는 주로 평등규범에 의한 분배를 선호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형평규범에 의한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의 인지 발달(투입과 산출의 비율적 계산능력의 발달)에 기인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 '공손 예의'를 습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예: 미국인)보다 평등규범의 선호가 강하다면(예: 박세영 & Harrison, 1998), 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보다 더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미국인보다는 우리 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결속을 더 중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Chen, Meindl, 및 Hunt(1997)는 수평적 집합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분배할 때, 평등규범에 잘 따르지 않는 반면, 수직적 집합주의(horizontal collectivism)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평등규범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위에 살펴 본대로 두 규범의 선택적 사용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각 규범이 자신의 필요한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유용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작업자간에 차후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차후에서의 이득을 위해, 응집성이 큰 집단에서는 인상관리를 위해(인상관리도 무형의 이득임) 평등규범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상의 분배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

동작업자 패러다임(coworker paradigm)을 사용하여 공동작업자의 한 사람인 피험자가 그 집단의 보상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공정한 분배로서 분배정의를 지키거나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려는 목적으로 분배기준을 선택해야하는 복잡하게 어우러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Lamm, Kayser, & Schwinger, 1982 참조).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 의해 혹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특정 목적이 우선 달성되는 규범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분배 규범의 선택에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개인의 동기위계를 선정하였고, 이득과 손실의 분배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 하나는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이하 이익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동기(이하 체면동기)이다. 때로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둘을 절충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예: 두 가지 동기 중 하나를 희생시키기 용이한 상황)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또 다른 어떤 상황(예: 투입크기의 차이가 크지만, 체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동기 중 어느 하나가 부각되는 상황은 (1)공동작업자간의 관계를 포함한 상황적 차이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2)그들이 분배할 자원의 유인가(이득의 분배와 손실의 분배)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장면에서 두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얻은 보상이나 잃게 될 손실을 그 중 한 사람의 분배자가 어떤 규범을 사용하여 분배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규범은 보상의 분배에서 가장 흔히 존재하는 규

범이지만, 사람마다 어떤 규범을 분배정의로 보는지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범을 사용해야 할 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즉 때로는 형평규범을, 때로는 평등규범을 사용한다.

실제의 보상분배 장면에서 자신의 투입이 큰 사람은 주로 투입에 비례한 보상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즉 형평규범 선호)이 있고, 자신의 투입이 작은 사람은 평등규범을 선호한다. 이러한 보상분배 규범의 선호 저변에는 선택한 규범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분배자는 그러한 자신의 이득추구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공정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규범을 정당화 혹은 합리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분배자가 상대방과 자신에게 제한된 보상을 분배할 때 혹은 손실을 분담할 때, 우선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추구하려는 동기(이득 동기)와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동기(체면 동기)가 모두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동기는 상황에 따라 그 위계(충족의 우선 순위)가 다를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보상(이득)의 분배에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개인의 동기 위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그 개인의 분배규범 선택이 달라지는 지의 여부를 실험 1에서 살펴 볼 것이다. 즉 이득 동기가 우세한 상황²⁾에서는 (1)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작은 경우는 “평등규범”을 선호하고, (2)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형평규범”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그 규범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면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1)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작은 경우는 “형평규범”을 선호하고, (2)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평등규범”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왜냐하면 그 규범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지각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실험 1).

또한 분배할 자원의 종류가 보상(정적 결과)인지 혹은 손실(부정적 결과)에 따라 분배자의 동기 위계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부정적 결과(예: 손실장면)는 정서와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어 두 가지 동기(이익추구 동기와 체면관리 동기)의 위계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두 동기 중 이익추구 동기가 체면관리 동기보다 우선하는 동기일 것이므로, 특히 손실분배의 경우는 상황과 비교적 무관하게 이익추구 동기(실제로는 손해를 적게 보려는 동기)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동기이론 예언).

부정적 결과의 발생은 인지과정을 활성화시킨다(Taylor, 1991). 즉 우리가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면, 인지과정(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과추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이 체면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되면, 손실의 책임크기를 따지면서 체면관리가 모두 충족되는 평등규범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체면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의 인지과정은 원인추론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귀인과정만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손실의 분배에서 자신의 투입크기를 고려하는 형평규범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귀인이론 예언). 즉 실험 2에서는 보상의 분배를 다룬 실험 1과는 달리 손실의 분배 형태를 조건별로 알아 볼 것이다(실험 2).

위의 예상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을 계획하였다. 먼저 실험 1에서는 보상의 분배에 사용하는 분배규범의 선택이 상황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이익이 강조하는 상황과 체면이 강조되는 두 상황을 만든 다음, 두 사람(피험자와 실험협조자)의 투입이 다른 경우에 그 중 한 사람(피험자)이 어떤 규범으로 주어진 보상(실험점수)을 분배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이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익명상태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된 보상을 분배하는 상황이다. 반면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에

2) 이 조건을 체면동기가 낮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추구 동기를 보다 기초적인 동기로 보고, 체면동기가 낮으면 이익추구동기가 우세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로 하였다.

서는 두 사람이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보상을 분배하며, 실험과제 중 '상대방에 대한 인상평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험 2에서는 보상(혹은 이득)뿐 아니라 손실(피해)의 분배(혹은 분담)에 사용하는 분배규범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성보다는 피해나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성이 더 강한 것이란 가정 하에 손실의 분배에서 구성원 각자의 잘잘못의 따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변화가 보상의 분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분배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보상의 분배와 손실의 분담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예: Mikula, 1980). 그러나 이득과 손실 상황을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두 상황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상당히 다름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고재홍(1997, 실험 2)의 상호성 규범의 준수여부를 다룬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적 상호성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되 갚는 정적 상호성보다 더 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Kahneman과 Tversky(1979)의 조망이론(prospectiv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장면에서는 보다 모험 추구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이득장면에서는 모험 회피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득과 손실의 협상과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득 분배협상의 경우보다는 손실 분배협상에서 협상자들이 더 거친 상호작용을 하며(예: Bazerman, Magliozzi, & Neale, 1985; Bottom & Studt, 1993; Olekalns & Frey, 1994; Schurr, 1987), 협상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다(Ohtsubo & Kameda, 1998).

이런 연구결과들은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는 손실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이고, 상대적 투입크기, 및 상황적 단서에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득상황보다는 손실상황에서 각자의 투입크기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한 분배 규범인 형평규범이 더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보상의 분

배에서는 분배자가 대체로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혹은 평등규범으로 분배되는 경향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손실이나 피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배자는 대체로 형평규범에 근거한 분배 경향성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분배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실험 2에서는 손실의 분담 상황에서 분배자의 분배규범 선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실험 1: 개인의 동기에 따른 보상분배 규범선호 형태

목적

실험 1에서는 집단성원들이 집단에게 제공된 보상(이득)의 분배 형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2인 1조의 집단이 한 팀으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피험자의 이득 동기가 부각되는 상황과 체면관리 동기가 부각되는 상황을 만든 다음, 각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자신과 공동작업자(실험협조자)의 몫으로 주어진 집단보상을 어떤 분배규범을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에게 분배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집단의 보상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상대방 동료와 분배해야 하는 경우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설이 옳다면, 본 실험 1에서 조작한 이익상황과 체면상황에서 각기 다른 규범을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규범 모두 공정한 규범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추구가 조장되는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의 이익추구에 부합되고 공정한 보상규범을 사용하는 반면 자신의 체면관리가 조장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유리하고 공정한 보상규범을 사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익추구 상황에서는 자신의 투입이 작은 경우 형평규범보다는 평등규범의 사용이 자신의 분배 몫을 크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규범으로 보상을 분배할 것이지만,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는 형평규범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보상을 분배할 것이다.

한편 자신의 체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정할 것으로 보이는 분배규범을 사용할 것이다. 즉 자신의 투입이 작은 경우에 평등규범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지각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형평규범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신의 투입크기가 큰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형평규범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평등 규범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 조건과 체면조건 모두에서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 동료의 투입크기와 동일한 경우는 평등규범에 근거한 분배와 형평규범에 근거한 분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분배규범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경남대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72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실험 참가점수(최하 5점~최고 15점)를 차등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6개의 실험조건에 무선 배정하였다.

독립변인

실험 1의 독립변인은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보상분배자가 처한 상황으로서, 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강조되는 상황이며 다른 한 조건에서는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먼저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다른 한 사람(실제로는 실험협조자)과 약 1.5m 간격을 두고 마주 앉아 한 팀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그 작업성과에 따라 그 팀에게 부여된 보상(실험점수 10점)을 자신과 상대방 동료에게 분배하는 상황이었다. 이 조건에서는 실험과제로서 보상분배이외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평정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시하고, 실험 탁자 위에 ‘호감평정 설문지’라는 제목의 10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미리 놓아둔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묻는 설문지에는 ‘이 사람이 당신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이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

람이 당신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이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10개 물음에 공통적으로 매우 싫다(1) - 매우 좋다(10)의 10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제작되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평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피험자가 자신과 상대방 동료에게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을 상대방(실험협조자)이 쳐다보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서로 얼굴도 볼 수 없는 익명상태의 상대방과 한 팀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그 작업성과에 따라 그 팀에게 부여된 보상(실험점수 10점)을 자신과 상대방 동료에게 분배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체면조건에서 실시하겠다고 지시한 상대방 동료의 인상을 평정하는 절차는 생략하였다.

또 하나의 독립변인은 개인의 투입크기이었다. 개인의 투입크기는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에게 각각 배정된 문제(문학·예술 문제 혹은 사회·경제 문제) 13개중에서 서로가 맞힌 정답 수이다. 정답 수는 그 집단에 부여되는 보상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집단의 정답 수의 합은 14개 혹은 15개로 조작하지만, 피험자와 실험협조자가 맞힌 정답 수를 다르게 알려줌으로써 조작하였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이 전체 집단의 정답 수에 2/5가 되도록 하였다. 즉 피험자 자신은 6문제를 맞힌 반면 자기 팀의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는 9문제를 맞힌 것으로 알려 주었다(이하 작은 투입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이 전체 집단의 정답 수에 정확히 1/2이 되도록 하였다. 즉 피험자 자신과 실험협조자가 모두 7문제씩 맞힌 것으로 알려 주었다(이하 동등 투입조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이 전체 집단의 정답 수에 3/5가 되도록 알려 주었다. 즉 피험자 자신은 9문제를 맞힌 반면 자기 팀의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는 6문제를 맞힌 것으로 알려 주었다(이하 많은 투입조건)3).

3) 어려운 과제에서의 정답 수를 투입크기로 조작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자신의 정답 수를 자신의 투입크기로 제대로 지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전체 논의 부분에서 제한점으로 다시 논의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1은 2×3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 구성하였다. 이중 첫 번째 요인은 피험자와 실험협조자가 처한 상황으로서 분배자(실제로는 피험자)의 동기위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추구 동기가 우세한 조건 혹은 체면관리 동기가 우세한 조건으로서 이는 실험상황으로 조작하였다. 다른 한 요인은 실험협조자인 공동작업자와 비교한 피험자의 상대적 투입크기(작은 경우, 동등한 경우, 혹은 큰 경우)로서,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큰 조건에서는 9문제, 동등조건에서는 7문제, 작은 조건에서는 6문제를 맞힌 것으로 알려준 거짓 귀환정보(false feedback)의 차이이다.

실험절차

피험자는 개별적으로 실험실로 인도되었다. 실험실에는 또 다른 한 사람(실제로는 실험협조자)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써 한 조를 이루어 폭 1.5m의 실험용 탁자 양편에 마주 앉도록 하였다. 각자가 앉은 탁자 위에는 필기구와 실험에 사용될 “실험지시문”, “보상 기준표”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실험자는 이들에게 먼저 실험의 목적과 개요에 대한 실험 지시문이 담겨있는 여성 목소리의 녹음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지시문의 녹음내용은 실험조건(이익 조건과 체면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이익 조건의 지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실험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마다 인지욕구(즉, 어떤 일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려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예를 들어 퍼즐, 바둑)를 푸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어떤 팀의 구성원들이 지닌 인지욕구가 얼마나 비슷할 때, 과제를 잘 수행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여러분 각자가 할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은 2인 1조로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은 같은 한 조입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의 인지욕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인지욕구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한 후 과제를 풀 것입니다. 과제를 풀고 나면 두 사람의 정답 수를 합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조별로 실험점수가 차등 부여될 것입니다. (조별로 부여된 점수를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다시 두 사람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먼저 실험자는 2명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그 사람에게 두 종류의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선택권을 줄 것입니다. 지명 받은 사람은 사회·경제에 관한 문제와 문학·예술에 관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그 사람에게 선택한 문제지를 드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나머지 한 문제지를 드릴 것입니다. 먼저 문제지 맨 위에 자신의 학번을 적으신 다음 문제지에 나와 있는 20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야 합니다. 푸는 방법은 문제 밑의 선택지에 ○표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모두 푸신 다음에 실험자는 두 사람의 정답 수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자는 두 사람의 정답 수를 합하여 많으면, 그 팀에게는 높은 점수를 드릴 것이며 정답수가 적으면 낮은 점수를 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정답수가 21개를 넘으면 그 팀에게는 20점을, 정답수가 16개에서 20개 사이이면 15점을, 11개에서 15개 사이이면 10점을, 그리고 두 사람의 정답 수 합이 10개 이하이면 5점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탁자 위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그 점수는 앞서 문제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한 사람에게 분배권을 줄 것입니다. 즉 앞서 문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실험자로부터 받은 점수를 자신과 상대방의 점수로 분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하면 공정하게 점수를 분배해야 하지만, 정해진 분배 기준은 없으므로 본인이 자유롭게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분배를 결정하셨으면, 실험자가 제시하는 두 장의 용지 위에 분할 내역(즉 자신의 점수 몇 점, 상대방의 점수 몇 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상대방이 분배한 점수 분배 용지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분배된 점수 외에도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5점의 추가 실험참여 점수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험에서 자신에게 분배한 점수(혹은 분배 받은 점수)와 실험참여 점수 5점의 합이 실제 성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점을 주지하시고 분배된 점수가 적힌 용지를 잘 간수하셨다가 학기말 시험 때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시면 각자의 학점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채면 조건의 지시문은 위의 굵은체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실험자는 지시문의 녹음을 들려 준 다음, 그들에게 각자의 인지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18문항으로 된 「인지 욕구 척도」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인지 욕구 척도는 Cacioppo, Petty, 및 Kao(1984)가 작성한 18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을 외양상 그럴듯하게 하기 위함이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인지 욕구 척도를 모두 작성하고 난 후, 실험자는 “이제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먼저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한 후, 한 명을 지정하였다. 이 때 실험자는 항상 실험협조자를 지정하였다. 실험협조자에게 두 가지 문제(사회·경제 문제와 문학·예술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시하고, 실험협조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였다. 이 때 실험협조자는 미리 협의한대로 문학·예술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 중 하나를 번갈아 가며 선택하였다.

실험협조자가 문제를 선택하면, 실험자는 그 문제를 실험협조자에게 주고 나머지 다른 한 가지 문제를 피험자에게 주었다. 각 문제지는 피험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20문제가 적혀 있었다. 20문제 모두는 3개의 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들이다. 각 문제는 피험자가 자신이 맞춘 문제 수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문학·예술 문제는 “한국화의 기법 중 발묵법, 파묵법, 적묵법 등은 무슨 기법에 속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①묘법, ②용묵법, 혹은 ③둘 다 아니다 중 하나로 답하도록 하고, 사회·경제 문제는 “고려 공양왕 때 만든 우리 나라 최초의 지폐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①덕화, ②정화, 혹은 ③둘 다 아니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피험자와 실험협조자가 20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실험자는 실험협조자와 피험자로부터 응답이 기록된 문제지를 건네받아 채점하는 척 하였다. 이때 채점의 결과는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실험조건에 따라 각자의 정답 수를 다르게 하여 공개적으로 통보하였다.

실험자는 실험협조자와 피험자의 정답개수(거짓 귀환정보로서 조건마다 9개, 7개, 및 6개임)를 공개적으로 알려 주고, 정답개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실험점수(실제로는 모든 조건에서 10점)가 제공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으로 “앞서 문제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피험자)이 실험자로부터 받은 10점을 자신과 상대방의 몫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점수분배 용지를 주면서 그 위에 자신의 점수 ()점, 상대방의 점수 ()점을 적어 넣도록 하였다. 이것이 실험 1의 주 종속변인이다.

각자가 실험 학점 증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으로 실험의 주요 절차는 끝났고, 그들에게 9개의 물음이 적혀있는 사후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인사와 실험내용의 기밀유지를 부탁하고 모든 실험을 마쳤다.

종속변인

실험 1의 주 종속변인은 피험자가 실험자로부터 자신과 상대방 동료의 공동 몫으로 받은 보상점수(10점)를 자신과 상대방 동료 몫으로 분배한 점수(이중 종속변인은 자신의 몫에 대한 점수)이다. 여기서는 한 팀에게 주어진 점수가 모두 10점이므로 분배자인 피험자가 상대방 동료인 실험협조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실험조건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사후 질문지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분배행동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1)당신이 한 점수분배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2)상대방은 당신의 점수분배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생각할 것 같은지 등을 7점 척도(매우 불공정, 1 - 매우 공정, 7)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배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3)당신은 당신의 점수분배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와 (4)상대방은 당신의 점수분배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 같은지를 역시 7점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도 (5)“당신은 상대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6)“당신은 상대방이 실험파트너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7)“당신은 점수를 분배할 때 상대방(예: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의식하셨습니까?” 등의 물음에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사용된 문제의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8)당신은 평소 문학·예술(혹은 사회·경제)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와 (9)상대방은 평소 사회·경제(혹은 문학·예술)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지를 역시 7점 척도 상(전혀 모름 - 매우 잘 안다)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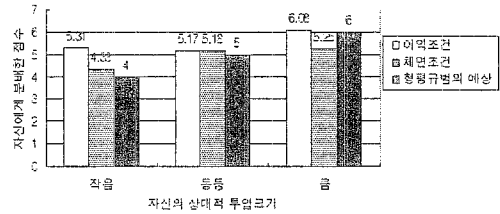


그림 1. 조건과 자신의 투입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한 점수

결과 및 논의

분배점수

실험 1의 주 종속변인은 실험자가 집단의 보상으로 배정한 10점을 피험자가 자신의 몫과 상대방(실험협조자)의 몫으로 분배한 점수크기이다. 이익조건과 체면조건, 그리고 피험자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에 따른 “자신에게 배정한 점수” 크기가 표 2와 3에 나와 있다. 표 2는 만약 피험자가 형평규범에 따라 분배할 경우의 예상 점수와 실제점수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표 2와 그림 1에서 보듯,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익조건의 경우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점수는 5.31점으로 이는 형평규범이 예상치(4점)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 $t(12)=3.99, p<.01$, 반면에 피험자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이지만, 체면조건에서는 피험자가 자신에게 실제로는 평균 4.33점을 배정하여 형평규범의 예상치(4점)로부터 이탈되지 않았다, $t(11)=1.77, ns$. 이상의 결과는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체면조건에서만 분배자가 형평규범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로 집단성원의 투입크기가 동일한 경우는 형평규범에 의한 예상치와 평등규범에 의한 예상치가 모두 5점이다. 실제로 이 조건에서는 이익조건($M=5.17$)과 체면조건($M=5.18$) 모두에서 두 규범에 의한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그림 참조).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결과가 어떤 규범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셋째로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이익조건에서 실제로 자신에게 배정한 점수($M=6.08$)는 형평규범에 의한 예상치(6점)로부터 이탈되지 않았다, $t(11)=0.36, ns$. 한편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크지만 체면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실제로 자신에게 배정한 점수($M=5.25$)가 형평규범의 예상치(6점)로부터 유의하게 이탈되어 있었다, $t(11)=5.75, p<.01$. 이 결과는 이 조건에서도 평등규범이 선호됨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의 투입이 작은 경우이면서 체면이 중시되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투입이 크면서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상황에서만 형평규범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표 3은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가 다른 경우에 그

표 2. 실험 1의 각 조건별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할 것으로 예상한 점수(형평규범)와 실제 배정점수 차이

조 건 들	예상점수(형평)	실제점수	차이점수	t	df	p
투입이 작은 조건						
이익조건(n=13)	4	5.31	+1.31	3.99	12	.002
체면조건(n=12)	4	4.33	+0.33	1.77	11	.104
투입이 동등한 조건						
이익조건(n=12)	5	5.17	+0.17	1.00	11	.339
체면조건(n=11)	5	5.18	+0.18	1.49	10	.167
투입이 큰 조건						
이익조건(n=12)	6	6.08	+0.08	0.36	11	.723
체면조건(n=12)	6	5.25	-0.75	5.75	11	.000

* 분배점수는 보상으로 받은 10점 중 자신에게 분배한 점수임.

표 3. 실험 1의 각 조건별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할 것으로 예상한 점수(평등규범)와 실제 배정점수 차이

조 건 들	예상점수(평등)	실제점수	차이점수	t	df	p
투입이 작은 조건						
이익조건(n=13)	5	5.31	+0.31	0.94	12	.367
채면조건(n=12)	5	4.33	-0.67	3.55	11	.005
투입이 동등한 조건						
이익조건(n=12)	5	5.17	+0.17	1.00	11	.339
채면조건(n=11)	5	5.18	+0.18	1.49	10	.167
투입이 큰 조건						
이익조건(n=12)	5	6.08	+1.08	4.01	11	.002
채면조건(n=12)	5	5.25	+0.25	1.92	11	.082

* 분배점수는 집단의 보상으로 받은 10점 중 자신에게 분배한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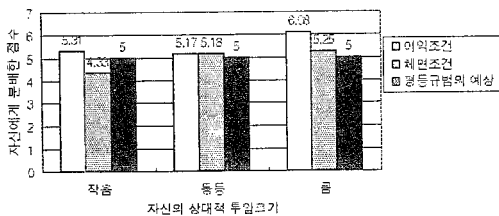


그림 2. 조건과 자신의 투입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한 점수

가 평등규범에 따라 분배할 경우의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간의 차이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표 3과 그림 2에서 보듯,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익조건인 경우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점수(5.31점)는 평등규범의 예상치(5점)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t(12)=0.94$, ns . 그러나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이지만, 채면조건에서는 평등규범의 예상치(5점)로부터는 유의하게 이탈되어 있었다, $t(11)=3.55$, $p<.01$.

피험자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이익조건에서 자신에게 배정한 점수($M=6.08$)는 평등규범에 의한 예상치(5점)로부터는 이탈되어 있었다, $t(11)=4.01$, $p<.01$. 한편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크지만 채면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실제로 자신에게 배정한 점수($M=5.25$)가 평등규범의 예상치(5점)로부터는 이탈되지 않았다, $t(11)=1.92$, $p>.05$. 이 결과는 이 조건에서 평등규범이 선호됨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투

입이 작을 때는 평등규범을 선호하고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는 형평규범을 선호하는 반면, 채면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투입크기가 동등한 경우는 분배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등한 분배를 하고 있었다.

공정성 지각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에 평등규범을, 투입크기가 큰 경우에 형평규범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배자 스스로 자신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 각각에서 (채면 때문에)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을 선택한 경우에도 자신의 분배를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별 분배의 공정성 지각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 4에 나와 있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분배자가 이처럼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동기(이익추구 혹은 채면)에 따라 보상의 분배규범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자는 자신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 지각

표 4. 실험 1의 각 조건별 분배자가 지각한 분배공정성 평정의 평균(표준편차)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			
	많음	동등	작음	전체
이익조건	5.00(1.71)	5.67(2.10)	4.08(1.26)	4.89(1.79)
채면조건	5.25(1.06)	6.27(1.42)	5.17(1.19)	5.54(1.29)
전 체	4.60(1.39)	5.96(1.80)	5.13(1.32)*	

* 수치는 매우 불공정(1) - 매우 공정(7)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점수임.

에서 이익조건($M=4.89$)과 체면조건($M=5.54$)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66)=3.38, p>.05$.

한편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에 따른 공정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66)=4.93, p<.05$. 즉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크기가 동등한 조건($M=5.97$)에서가 투입이 큰 조건($M=5.13$)과 작은 조건($M=4.62$)보다 자신의 분배를 가장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분배자는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형평규범과 평등규범 사이에서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ns$.

실험 2: 손실분배 상황에서 분배규범 선호

목적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이득이나 보상의 분배상황 이외에도 공동손실이나 공동으로 해야 할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가 집안 일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대학에서 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양쪽 당사자가 전체 손실액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혹은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의 부담액을 각 공장에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집단에서 흔히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이득분배에 못지 않게 손실의 분배가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배 정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보상이나 이득의 분배를 다루고 있고, 몇몇 예외는 있지만 손실이나 부담의 분배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Cook & Hegtvelt, 1983; Deutch, 1983; Griffith, 1989).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보상분배와 손실분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ikula(1980)는 “... (나의) 논의는 정적이며 물질적 재물의 분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물질적 재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물질적/비물질적 재물의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 적용될 것으로 본다”(p.127) 라

고 하였다. 경제학자인 Elster(1992)도 “부정적인 것은 항상 정적인 것의 역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정적인 것의 분배와 부정적인 것의 분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p.19) 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심리학자들은 정적 현상과 부정 현상이 대칭적인 것이 아니고, 각각은 상당히 다른 심리적 기제와 반응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예: 고재홍, 1990, 1997; Taylor, 1991). 예를 들어 고재홍(1990)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예: 잘생긴 외모)과 반대되는 특성(예: 못생긴 외모)을 지닌 사람을 “싫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Taylor(1991)도 사람들이 정적 사건의 경우보다는 부정 사건에 더 민감하여 더 큰 생리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 사건(예: 실패)은 정적 사건(예: 성공)에 비해 우리의 인과추론과정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Bohner, Bless, Schwarz, & Strack, 1988). 실험 2는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한 보상과 부담(손실)의 분배규범이 특정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정적 결과를 만난 경우와 부정 결과를 만난 경우 다른 감정적 및 인지적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은 분배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보상(정적 결과)과 손실(부정 결과)의 분배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부정 결과(예: 손실장면)는 정서와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어 두 가지 동기(이익추구 동기와 체면관리 동기)의 위계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볼 때, 두 동기 중 이익추구 동기가 체면관리 동기보다 우선하는 동기일 것이므로, 손실의 분배 상황에서는 이익추구 동기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손실의 분배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피험자 자신의 투입(여기서는 집단손실의 책임) 크기가 큰 경우는 평등규범을 선택하여 집단손실을 자신과 상대방이 균등하게 분배하려 할 것이다. 반면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경우는 형평규범을 선택하여 집단손실을 자신과 상대방의 책임크기에 따라 분배하려 할 것이다(동기이론 예언).

부정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또 다른 결과는 귀인

과정과 관련된다(Taylor, 1991). 부정 결과는 상황에 대한 지각과 원인추론(예: 각자의 투입비율)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만약 상황이 자신의 체면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실패(손실발생)의 원인추론이 활성화 될 것이고, 원인추론의 결과(누구의 잘못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가 분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집단손실에 대한 피험자 자신의 책임(투입)크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모두에서 피험자 자신의 책임크기에 따른 손실의 분배(즉 형평규범)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황이 자신의 체면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각되면, 이는 손실의 책임크기에 따른 분배를 억제하여 책임크기와 체면관리가 모두 충족되는 평등규범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귀인이론 예언).

위에서 정리한 손실의 분배에 관한 예언은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나올 수 있다. 먼저 동기이론이다. 동기이론에 따르면, 첫째, 사람들이 부정 결과에 직면하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날 것이므로, 이런 경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 하는 체면동기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사람들은 부정 결과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으로 주의집중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는) 이익동기가 (상대방을 고려하는) 체면동기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상황이 체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손실의 분배에서는 자신의 이익 동기가 우세하여 자신의 투입이 작은 경우는 손실분배에서 평등규범이 선호되는 반면,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는 손실분배에서 형평규범이 선호될 것이다. 이런 결과 형태는 체면이 강조되는 조건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의 예언은 귀인이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 결과에 직면했을 때 인지과정(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과추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주어진 상황이 자신의 체면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되면, 손실의 책임크기를 따지면서 체면관리가 모두 충족되는 평등규범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즉 이득상황)에서는 귀인과정만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손실의 분배에서 자신의 투입크기를 고려하는 형

평규범이 우세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경남대에 재학중인 1~2학년 여대생 47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실험 참가점수(최하 5점~최고 15점)를 차등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4조건에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2의 실험설계는 2×2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상황으로 (피험자 입장에서) 자신이 이득이 강조되는 상황과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인은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의 상대적 투입크기이다.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크기가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그 집단에 손해에 더 많이 기여한 경우)이고, 다른 한 조건은 피험자의 상대적 투입크기가 큰 경우(그 집단에 손해에 더 적게 기여한 경우)이다. 즉 자기 집단에게 부과되는 손실에 피험자 자신과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가 기여한 상대적 투입 크기를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독립변인

실험 2의 첫 번째 독립변인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손실의 분배자가 처한 상황으로서, 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강조되는 상황이며 다른 한 조건에서는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먼저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다른 한 사람(실제로는 실험협조자)과 약 1.5m 간격을 두고 마주 앉아 한 팀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그 작업성장에 따라 그 팀에게 기본점수에서 공제되는 손실(실험점수)을 자신과 상대방 동료에게 분배하는 상황이었다. 이 조건에서는 실험과제로서 손실의 분배이외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평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시하고 실험 탁자 위에 '호감평정 설문지'라는 제목의 10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미리 놓아두었다. 한편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서로 얼굴도 볼 수 없는 익명상태의 상대방 1인과 한 팀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그 작업성장에 따라 그 팀에게 공제하는 손실(실험점

수)를 자신과 상대방 동료에게 분배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손실점수의 분배 이외의 상대방 동료의 인상을 평정하는 절차는 생략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개인의 투입크기이다. 투입크기는 피험자 자신이 맞춘 정답 수와 상대방 파트너인 실험협조자가 맞춘 정답 수이다. 개인의 투입크기는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에게 각각 배정된 문제(문학·예술 문제 혹은 사회·경제 문제) 20개중에서 서로가 맞힌 정답 수이다. 정답 수는 그 집단에 부여되는 손실(반납 점수)의 크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집단의 정답 수의 합은 15개로 조작하였지만, 피험자와 실험협조자가 맞힌 정답 수를 다르게 알려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이 전체 집단의 정답 수에 $2/3$ 가 되도록 하였다. 즉 피험자 자신은 10문제를 맞힌 반면 자기 팀의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는 5문제를 맞힌 것으로 알려주었다(이하 작은 투입조건). 또 다른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투입이 전체 집단의 정답 수에 $1/3$ 이 되도록 하였다. 즉 피험자 자신은 5문제를 맞힌 반면 자기 팀의 상대방 동료(실험협조자)는 10문제를 맞힌 것으로 알려 주었다(이하 많은 투입조건).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의 투입이 동등한 조건은 실험 2에서 제외하였다.

절차

실험 2의 절차는 실험 1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단 녹음기를 통해 제시될 지시문의 녹음내용은 실험 1과 대동소이하지만 보상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실험참여의 대가로 제공된 개인의 실험점수에서 집단 성과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공제한다(즉 다시 뺏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손실의 분배를 위해 실험자는 실험협조자와 피험자의 정답개수를 공개적으로 알려 주고, 미리 피험자들에게 제공된 15점에서 그들의 정답개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실험점수(실제로는 모든 조건에서 10점)를 다시 실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혹은 공제하겠다)고 알려주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시문에서 다음과 같다.

중략

문제를 모두 푸신 다음에 실험자는 두 사람의 정답 수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자는 두 사람의 정답 수를 합하여 많으면, 그 팀에게는 점수를 공제하지 않거나 적은 점수를 공제할 것이며, 정답수가 적으면 많은 점수를 공제할 것입니다. 공제된 점수는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기본 점수로 제공한 10점(총 20점)중에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정답수가 21개를 넘으면 그 팀에게는 0점을, 정답수가 16개에서 20개 사이이면 5점을, 11개에서 15개 사이이면 10점을, 그리고 두 사람의 정답 수 합이 10개 이하이면 15점을 공제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탁자 위의 점수공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또 다른 독립변인인 상황은 분배자의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과 이득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체면이 강조되는 상황(이하 체면 조건)은 피험자와 실험협조자가 마주 보며 앉은 상태이었고, 지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었다. 그 지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점수분배를 마친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인상을 평정하는 순서입니다. 이를 위한 설문지는 탁자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험을 같이 참여하면서 상대방에게 느낀 점들을 실험자가 제시하는 설문지 위에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한편 분배자의 이득이 강조되는 상황(이하 이익조건)에서는 피험자와 실험협조자 사이를 커튼으로 가려서 서로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장해 주었다. 또한 지시문의 마지막 부분(위의 내용)에 있는 인상평정 과제에 관한 지시를 생략하였다. 대신 두 사람 사이를 커튼으로 가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략

각 조에서 부담해야할 점수를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다시 두 사람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이하 생략

그 다음으로 “이 집단에서 실험자에게 반납할 10점을 앞서 문제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피험자)이 자신과 상대방의 몫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험자에게 점수분배 용지를 주면서 그 위에 자신이 부담할 점수 ()점, 상대방이 부담할 점수 ()점을 적어 넣도록 하였다. 이것이 실험 2의 주 종속변인이다. 그 이외에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사후 질문지를 통해 각 조건에서의 공정성 지각, 만족도 지각 등을 살펴 보았다.

종속변인

실험 2의 주 종속변인은 피험자가 실험자에게 자기 집단에 부여된 손실 크기(총 10점)를 자신이 부담할 점수와 상대방 동료가 부담할 점수로 분배한 몫이다. 여기서는 한 팀에게 부과된 손실 점수가 모두 10점이므로 분배자인 피험자가 상대방 동료인 실험협조자에게 부과한 점수를 두 실험조건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후 질문지의 내용은 실험 1의 그것들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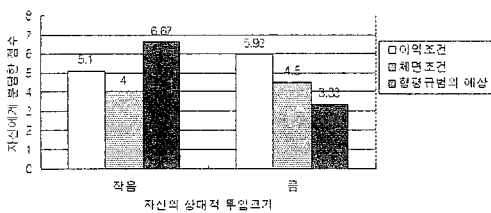


그림 3. 조건과 자신의 투입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분담한 점수

결과 및 논의

분배점수

실험 2의 주 종속변인은 실험자가 집단이 배상하도록 요구한 10점을 피험자가 자신이 담당할 몫과 상대방(실험협조자)이 담당할 몫으로 분배한 점수크기이다. 이익조건과 체면조건, 그리고 피험자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에 따라 분배자(피험자) “자신이 분담한 점수” 크기의 평균이 표 5와 6에 나와 있다.

표 5는 만약 분배자가 형평규범에 따라 자신의 손실분담 크기를 결정할 경우의 예상치와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결정한 손실분담 점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즉 집단손실에 대한 책임이 큰) 이익조건,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분담점수는 5.10점으로 이는 형평규범이 예상치(6.67점)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었다, $t(9)=3.43, p<.01$. 또한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체면 조건에서는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분담점수의 평균은 5.93으로서, 이 점수도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 예상치(6.67점)로부터 이탈되었다, $t(13)=3.35, p<.01$.

한편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큰(즉 자신이 상대방에 비해 그 집단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작은), 이익조건,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분담점수의 평균은 4.00점으로 형평규범의 예상치(3.33점)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 $t(10)=2.48, p<.05$. 이 경우 분담크기 평균이 4.00인 점으로 보아 집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적지만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자는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보다는 평등규범의 예상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손실의 분담에서

표 5. 각 조건별 피험자 자신이 분담할 것으로 예상한 손실분담 점수(형평규범)와 실제 분담점수 차이

조 건 들	예상점수(형평)	실제점수	차이점수	t	df	p
투입이 작은 조건						
이익조건(n=10)	6.67	5.10	-1.57	3.43	9	.008
체면조건(n=14)	6.67	5.93	-0.74	3.35	13	.005
투입이 큰 조건						
이익조건(n=11)	3.33	4.00	+0.67	2.48	10	.032
체면조건(n=12)	3.33	4.50	+1.17	5.08	11	.000

* 분담점수는 집단이 배상해야 할 10점 중 자신이 분담하겠다고 응답한 점수임.

표 6. 각 조건별 피험자 자신이 분담할 것으로 예상한 손실분담 점수(평등규범)와 실제 분담점수 차이

조 건 들	예상점수	실제점수	차이점수	t	df	p
투입이 작은 조건						
이익조건(n=10)	5	5.10	+0.10	0.22	9	.832
체면조건(n=14)	5	5.93	+0.93	4.19	13	.001
투입이 큰 조건						
이익조건(n=11)	5	4.00	-1.00	3.71	10	.004
체면조건(n=12)	5	4.50	-0.50	2.17	11	.053

* 분담점수는 집단이 배상해야 할 10점 중 자신이 분담하겠다고 응답한 점수임.

표 7. 실험 2의 각 조건별 분배자가 지각한 분배공정성 평정의 평균(표준편차)

	자신의 상대적 투입크기		
	많 음	작 음	전 체
이익조건	4.70(1.49)	4.36(1.21)	4.52(1.33)
체면조건	5.07(1.14)	4.67(1.61)	4.88(1.37)
전 체	4.92(1.28)	4.52(1.41)	4.72(1.35)*

* 수치는 매우 불공정(1) - 매우 공정(7)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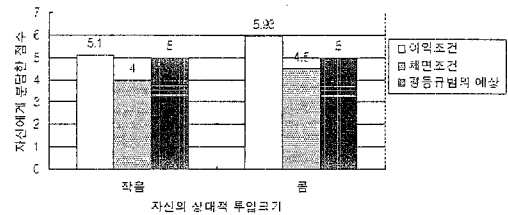


그림 4. 조건과 자신의 투입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분담한 점수

는 전체적으로 형평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만약 분배자가 평등규범에 따라 자신의 손실분담 크기를 결정할 경우의 예상치와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결정한 손실분담 점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 7과 그림에서 보듯,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즉 집단손실에 대한 책임이 큰) 이익조건의 경우,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분담점수는 5.10점으로 평등규범의 예상치(5점)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t(9)=0.22$, ns . 이는 이익조건에서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아 집단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손실분담에서는 분담크기를 똑같이 하는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작은 체면 조건의 경우에는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분담점수는 5.93으로서 평등규범의 분담 예상치(5점)로부터 유의하게 이탈되어 있었다, $t(13)=4.19$, $p<.01$. 이 조건의 분담크기 평균이 5.93인 점으로 보아 집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많고 체면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 분배자는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크기와 평등규범에 의한 분담크기의 중간에서 자신의 분담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형평규

범과 평등규범 중 어느 하나의 규범만을 사용하는 것 같지 않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투입이 작은 경우(집단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큰 경우)는 이익조건과 체면조건 모두에서 형평규범에 따른 예상치로부터 부적으로 이탈되어 있었으므로(즉 그보다는 적게 부담하려 하였으므로) 평등규범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상대방보다 크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의 경우, 자신에게 실제 배정한 분담점수의 평균(4.00점)은 평등규범의 예상치(5점)로부터도 이탈되어 있었다, $t(10)=3.71$, $p<.01$. 위의 결과에서 이 조건의 분담 평균치(4.00점)가 형평규범의 예상치로부터도 이탈된 점으로 보아 집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적지만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자는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크기와 평등규범에 의한 분담크기의 중간에서 자신의 분담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험자 자신의 투입크기가 큰 체면 조건의 경우에는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분담점수의 평균은 4.50이었다. 이는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 예상치(3.33점)로부터도 이탈되었고 $t(10)=5.08$, $p<.01$, 평등규범의 분담 예상치(5점)로부터는 경계적으로 유의한

이탈을 보여주었다, $t(10)=2.17, p<.06$. 이 결과도 역시 집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작지만 체면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분배자는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크기와 평등규범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분담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분배규범 중에서는 평등규범 쪽의 선호가 더 강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집단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작은 경우)는 이익조건과 체면조건 모두에서 형평규범에 따른 예상치로부터 정적으로 이탈되어 있었으므로(즉 그보다는 많이 부담하러 하였으므로), 역시 평등규범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단의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배자는 평등규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크고, 이익을 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책임은 작고 체면을 중시해야 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이 크고 체면을 차려야 하는 조건과 자신의 책임이 작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두 규범의 혼용하여 혹은 중간에서 분담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이 작은 경우는 이익조건과 체면조건 모두에서 어느 한 규범으로 분담크기를 결정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손실의 분담은 보상이나 이득을 분배하는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

공정성 지각

위의 결과들에서 보듯, 자기집단의 손실분담에서 전체적으로 분배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M=4.55$)에서는 체면조건($M=5.21$)에서보다 자신이 더 적은 점수를 분담하였고, $F(1, 43)=5.13, p<.01$, 자기집단의 손실에 대한 분배자 자신의 책임 작은 경우($M=4.25$)에서보다는 자신의 책임이 큰 경우($M=5.51$)에 자신이 더 많은 점수를 분담하였다, $F(1, 43)=18.57, p<.01$. 이처럼 조건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기 규범이 다르게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공정성 지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별 분배의 공정성 지각치를 알아본 결과의 요약이 표 7이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공정성 지각에서 피험자 자

신이 결정한 두 사람의 분담크기에 대한 공정성의 지각에서는 이익조건($M=4.52$)과 체면조건($M=4.88$)간에 차이가 없었고, $F<1, ns$, 자신의 책임이 작은 경우($M=4.52$)와 큰 경우($M=4.89$)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ns$. 뿐만 아니라 사후 질문지로 측정한 기타 다른 종속변인에서도 조건간에 특이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전 체 논 의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물음 중의 하나가 집단에게 제공된 제한된 자원(보상)이나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손실피해를 집단성원들이 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대로 보상이나 손실의 분배에서 “공정성”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예: Deutch, 1985). 실제로 분배의 공정성에 관한 규범은 모든 문화권이나 사회 집단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론적으로도 분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주제는 오래 전부터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및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속하는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Adams(1963, 1965)가 자원의 분배는 자신의 기여(투입)크기에 따라 분배될 때, 공평하다고 지각된다는 주장(형평이론)을 제기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분배행동이나 그 결과의 공정성 지각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에서도 공정성의 규범이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분배자 개인도 상황에 따라 자기 다른 분배규범을 선호한다. 본 연구는 분배자의 분배규범이 중다 기준(multi-criteria)에 근거한다는 가정 하에 분배규범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상황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분배자의 분배규범을 선택하는데 관여하는 상황적 요인은 공산주의-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그 집단의 응집성(장성수, 1985), 사전에 규정된 분배규범(Deutch, 1975), 분배자

와 공동작업자간의 관계(Austin, 1980; Shapiro, 1975), 그리고 보상분배를 누가(공동작업자 중 한 사람 혹은 제 3자)가 하느냐의 여부(Bazerman, 1985) 등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룬 두 가지 보상분배 규범(형평규범과 평등규범)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동작업자들간의 인간 관계이다. 즉 그들의 관계가 공동운명체 관계이거나 결속이 강한 관계에서는 평등규범이 선호되는 반면, 개별적이거나 결속이 약한 관계에서는 형평규범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예: 장성수, 1985). 그러나 그 조건들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상황에 따라 특정 분배규범이 우세하게 나타난 이유를 분배자 개인의 동기위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상과 피해(손실)의 분배 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 하나는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동기이다. 상황에 따라 개인의 동기 위계는 바뀔 수 있고, 상황에 의해 변화된 개인내의 동기위계에 따라 그가 지향하는 분배규범(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험 1에서는 분배자 개인의 이득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작은 경우는 “평등규범”을 지향하고,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형평규범”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그 규범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면 동기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작은 경우는 “형평규범”을 지향하고, 자신의 투입이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는 “평등규범”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분배하게 될 자원의 유인가(보상의 분배 혹은 손실의 분배)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지향되는 규범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이론들(동기적 설명과 귀인이론적 설명)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증하려 하였다. 여러 학자들은 보상의 분배와 손실의 분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예: Mikula, 1980).

그러나 이득과 손실 상황을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두 상황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바 있다. 고재홍(1997)의 최근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손실을 입었을 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부정 상호성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되 갚는 정적 상호성보다 더 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Kahneman 등의 조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장면에서는 보다 모험 추구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이득장면에서는 모험 회피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귀인을 다룬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적 사건의 경우보다는 부정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정 결과(예: 손실의 발생)는 긍정적 결과(예: 이득의 발생)에 비해 상황의 해석에 대한 민감함을 동반하고, 결과의 원인추론과정을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먼저 동기적 설명이 옳다면 손실을 공동작업자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은 부정 결과가 주어진 후에 구성원들이 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정서와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어 두 가지 동기(이익추구 동기와 체면관리 동기)의 위계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두 동기 중 이익추구 동기가 체면관리 동기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익추구 동기가 손실의 분배형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체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분배규범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귀인이론적 설명이 옳다면, 부정 결과가 초래하는 인지과정의 활성화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부정 결과의 발생원인에 대한 탐색결과가 분배규범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Taylor, 1991). 즉 우리가 손실을 분담해야하는 부정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체면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투입비율 등을 엄격히 억제하여 평등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황의 해석이 필요치 않은 상황(즉 이득상황)에서는 손실의 발생에 관한 실패의 원인추론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 경우 실패의 책임규명이란 의미로서 철저한 형평분배 규범이 지향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 2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두 이론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다. 즉 집단의 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큰 경우는 이득추구 조건에서만 평등규범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의 손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작은 경우는 양상이 복잡하였다. 이득 추구조건에서는 분배가 형평규범에 의한 분담 예상치와 평등규범에 의한 분담 예상치의 중간으로 나타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못하였다. 단지 체면조건에서는 대체로 평등규범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인이론의 예상이 타당해 보였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⁴⁾. 첫째,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과제는 정답이 어려운 문제풀이이었다. 피험자 입장에서 정답여부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실험자가 과제 후 제공하는 귀환정보(정답 수)를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이 받은 점수를 본인은 '우연히 맞힌 점수'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투입크기로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실험 1의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능력지각에 관한 평정치에서 피험자 자신의 투입이 큰 경우(즉, 상대방보다 많이 맞힌 경우)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상대방보다 크다고 지각한 반면, 투입이 작은 경우(즉, 상대방보다 적게 맞힌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이 자신보다 큰 것으로 지각하였다, $F(1, 47)=3.53, p<.067$. 또한 실험 2에서도 자신의 책임 큰 조건(즉 상대방보다 자신이 적게 맞힌 조건)이 자신의 책임크기가 작은 조건보다 상대방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F(1, 46)=44.79, p<.01$. 만약 피험자들이 노력이 외에도 자신과 상대방의 능력크기도 집단의 투입크기로 지각한다면 어려운 문제의 정답차이로 투입크기를 조작한 본 연구의 처치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투입크기 조작이 피험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의도한 집단성원 각자의 투입크기(예: 6대 4)를 정확히 지각하도록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특히 실험 1의 경우)은 본 연구의 결과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4) 아래의 제한점들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이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둘째, 본 연구는 일회적인 투입크기만을 고려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간 관계나 집단간 관계는 일회적인 투입에 따른 분배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비교적 장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입크기로서만 자신들의 보상과 손실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장기적 투입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상과 손실의 분배에서 상황에 따른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의 우세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보상과 손실의 본질(예: 어떤 보상인가?)에 따라 분배에서 사용되는 규범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상과 손실은 '보너스 학점'이었다. 이런 경우 구성원들의 그 보상에 대한 필요성(need)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필요성 크기가 보상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형평과 평등규범 이외에도 피험자들은 다른 분배규범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1990). 사람평가의 비대칭성: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반대 특성을 지녔는가? 경남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 편), 제17집, 89-109.
- 고재홍(1997). 우리는 늘 받은 만큼 되갚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11(2), 53-75.
- 박세영 · Harrison, W.(1998). 형평이론에서 투입과 성과요인의 가중치와 분배원칙 선호: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 연구. 韓國心理學會誌: 産業 및 組織, 11, 155-177.
- 장성수(1987). 집단 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광선(1987). 보수분배원리의 선택에 미치는 상황규범적 요인과 인상관리적 요인의 효과. 社會心理學研究, 3(2), 65-83.
- 한규석(1987). 분배형태의 결정에 미치는 이기적 동기의 영향. 社會心理學研究, 3(2), 161-182.

- Adams, J. S.(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422-436.
-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 NY: Academic Press.
- Austin, W.(1980). Friendship and fairness: Effects of type of relationship and task performance on choice of distribution ru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402-408.
- Bazerman, M. H.(1985). Norms of distributive justice in interest arbitration. *Journa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8, 558-570.
- Bazerman, M. H., Magiozzi, T., & Neale, M. A. (1985). Integrative bargaining in a competitive marke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5, 294-313.
- Bohner, G., Bless, H., Schwarz, N., & Strack, F. (1988). What triggers causal attribution? The impact of valence and subjective prob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35-345.
- Bottom, W. P., & Studt, A.(1993). Framing effects and the distributive aspect of integrative bargain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6, 459-474.
- Cacioppo, J. T., Petty, R. E., & Kao, C. F.(1984). The efficient assessment of need for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306-307.
- Chen, C. C., Meindl, J. R., & Hunt, R. G.(1997). Testing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llectivism: A study of reward allocation preferences in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23-43.
- Cook, K. S., & Hegtvedt, K. A.(1983). Distributive justice, equity, and 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217-241.
- Deutch, M.(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37-149.
- Deutch, M.(1983). Current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justi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05-319.
- Deutch, M.(1985). *Distributive justice*.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lster, J.(1992). *Local justic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iuliano, T., & Wegner, D. M.(1981). Justice and social awareness. *Presented at symposium: Justice as a pervasive theme in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Los Angeles, August.
- Griffith, W. I.(1989). The allocation of negative outcome: Examining the issues. In E. Lawler and B. Markovsky(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Vol. 6), Greenwich, CT: JAI Press.
- Kahn, A., O'Leary, V. E., Krulewitz, J. E., & Lamm, H.(1980). Equity and equality: Male and female means to a just en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 173-197.
- Kahneman, D., &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Lamm, H., Kayser, F., & Scwinger, T.(1992). Justice norms and other determinants of allocation and negotiation behavior. In M. Irle and L. B. Katz (Eds.), *Studies in decision making: Soci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approach*. Berlin: W. de. Grueter.
- Lerner, M. J.(1975).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

- sues, 31, 1-19.
- Leventhal, G. S.(1976). The distribution of rewards and resources in groups and organizations. In L. Berkowitz and E. Walster(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Y: Academic Press.
- Leventhal, G. S., & Anderson, D.(1970). Self interest and the maintenance of 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312-316.
- Leventhal, G. S., & Michaels, J. W.(1969). Extending the equity model: Perception of inputs and allocation of reward as a function of duration and quantity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303-309.
- Meller, B. A., & Baron, J.(1993).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justice: Theory and applic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ssick, D. M.(1993). Equality as a decision heuristics. In B. A. Mellers and J. Baron(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justice: Theory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ssick, D. M., & Schell, T.(1992). Evidence for an equality heuristic in social decision making. *Acta Psychologica*, 80, 311-323.
- Messick, D. M., & Sentis, K. P.(1983). Fairness, preference, and fairness biases. In D. M. Messick and K. Cook(Eds.), *Equity theory: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NY: Praeger.
- Mikula, G.(1980). On the role of justice in allocation decision. In G. Milkuda(Ed.), *Justice and social interactio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 from psychological research*. NY: Springer-Verlag.
- Mikula, G., Petri, B., & Tanzer, N.(1990). What people regard as unjust: Types and structure of everyday experiences of injusti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133-149.
- Ohtsubo, Y., & Kameda, T.(1998). The function of equality heuristic in distributive bargaining: Negotiated allocation of costs and benefits in a demand revelation contex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90-108.
- Olekalns, M., & Frey, B. E.(1994). Market forces, negotiator frames, and transaction outcom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403-416.
- Schurr, P. H.(1987). Effects of gain and loss decision frames on risky purchase negotiation of busi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351-358.
- Shaffer, L. S.(1983). Toward Pepitone's vision of a normative social psychology: What is a social norm?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4, 275-294.
- Shapiro, E. G.(1975). Effect of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on reward allocations in dyads: Equity or 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873-880.
- Taylor, S. E.(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67-85.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London: Allyn & Bacon.

Preferred Distributive Norm in the Reward and Cost Allocating Situation

Jae-Hong Ko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consisting of two related experiments using two co-worker paradigm concerns to search the preference pattern in the outcome(reward and cost) allocating situation. It was assumed that allocators had the motive to maximize their benefits and to manage their impression simultaneously. After one subject and one confederate work together, in experiment 1 subjects asked to allocate their reward (academic credits) to them and their coworker(confederate) and in experiment 2 asked to cost(academic credits) allocation. In experiment 1, when the motive of subject to maximize self-benefit was prior to impression management and his input(manipulated by the relative size of their and coworker's correct answers) was smaller than coworker's, he allocated their reward according to equality norm. But subject allocated their reward according to equity norm in situation which his motive to manage self-impression was prior to self-benefit and his input was larger than coworker's. In experiment 2 dealing with cost allocation, it was found that subjects generally preferred equality norm to equity norm. Especially when the motive of subject to manage self-impression was prior to that of self-benefit and his responsibility of the cost was larger than coworker's, subject prefer equality norm to equity norm in allocating their cost. Generally speaking, subjects' preference of distributive norms is different according to outcome valence (reward and cost) and the priority of their motives. Finally abov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s.